

	꿈 · 땀 · 보람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전주용성초등학교 (063) 227-46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면 시행 안내(2024.3.28.시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따뜻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4.3.28.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률보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 (2024.3.28.개정)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공무방해, 무고, 상해 및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 불법정보 유통행위,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보호자의 학교 교육에 대한 건강한 의견 제시는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 정지 5. 학급 교체 6. 전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 교원지위법 제35조(과태료): 침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침해 행위의 주체로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교원 지위법 제20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절차
1. 초기개입: 피해교원 안전조치, 교육현장 안정화 2. 보호조치 및 사안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조사 3. 조치 결정 및 처분: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소집, 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조치 의결 및 통지 및 이행 독려,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 필요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안내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및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로 이관함.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2024.3.28.개정)

교육활동 관련 상담을 위한 절차

1. 전화 상담 전에 편안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함
 2. 방문 상담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함
- ※ 내 아이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학교의 업무 상황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학교 행사



교육행정 업무

“선생님들의 업무는 갈수록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업무영역 확대



드론



토론, 거꾸로수업



AI(인공지능)



각종 안전교육



AR(가상), VR(증강)



급식 및 영양교육



빅데이터 통한 정보



원격 강의



다문화교육



3D 프린팅

“급변하는 교육 환경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3. 학생 특성이해 및 생활지도 업무의 어려움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인 학생들



생활지도 거부



분노 조절 장애



학업중단학생 증가



사이버폭력 증가



임시 위주 교육



ADHD 증가



자해 증가



사회성 부족

“복잡하고 다양한 학생 유형에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을 키우는 협력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을 모두 살피기 어렵고, 인성교육, 생활습관, 학생 간 관계 등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3.

전주용흥초등학교장